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451호 2016. 1. 29. (금요일)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6-7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108차 2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6-46호 하동군 행정예고 실시 현황 공고 4
- 하동군 공고 제2016-50호 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 5
- 하동군 공고 제2016-52호 하동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8
- 하동군 공고 제2016-57호 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14
- 하동군 공고 제2016-73호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18
- 하동군 공고 제2016-80호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운영 조례안 19
- 하동군 공고 제2016-111호 2016년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모집공고 38

회 람									
--------	--	--	--	--	--	--	--	--	--

하동군 고시 제2016-5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108차)

우리군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1. 21.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연화길 20 외 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9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6. 1. 2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하 동 군 공 보

(3) 제 451 호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05-10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연화길 20	20160121	20070618	연꽃을 상징하는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신대리 490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상신대길 28-18	20160121	20070618	신대리 윗쪽 마을이라 하 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문암리 74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덕천로 298-6	20160121	20070618	도로구간이 덕천강을 따라 이어지고 있어 강이름에 서 도로명부여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우계리 산185-1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원우길 10	20160121	20070618	원우라는 자연마을이름 반 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 475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금성로 90-1	20160121	20070619	금성면을 통과하는 주요 간선도로로 면이름에서 부여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회신리 856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내회신길 152	20160121	20080402	양지마을 옆 회신교에서 계곡을 따라 깊숙히 들어 간 곳에 위치한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탐리 101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백혜길 102	20160121	20090302	마을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대덕리 207-1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잔너리길 46	20160121	20090302	작은나루라는 뜻의 옛지명 에서 유래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431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화심안길 9-7	20160121	20130520	마을명을 도로명에 반영	

하 동 군 공 보

(4) 제 451 호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하동군 공고 제2016 - 46호

하동군 행정예고 실시현황 공고

「행정절차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하동군이 2015년 중 실시한 행정예고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2015년 하동군 행정예고 실시현황
2. 행정예고 실시현황 통계

(단위 : 건)

① 총 건수	② 예고 대상				③ 예고 매체 (중복 표기)				④ 예고 기간	
	고시	훈령	예규	기타	관보· 공보	인터넷	신문 방송	기타	20일 이상	20일 미만
135	106	-	-	29	72	130	9	85	61	74

<작성 방법>

- ① 총 건수는 2015년 중 실시한 행정예고 전체 건수임
- ② 예고대상 : 고시, 훈령, 예규, 기타로 분류하며, 전체 합계는 총 건수와 동일함.
 - 고시 : 행정기관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형식
 - 훈령 :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 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 예규 : 행정사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한 것
 - 기타 : 그 밖에 다양한 형태의 정책, 제도, 계획 등을 말함
 - * 규정, 규칙, 내규 등은 명칭에 관계없이 내용을 감안하여 위 예고대상으로 분류
- ③ 예고매체 : 「행정절차법」 제42조(예고방법)를 준용하여 관보(공보), 인터넷, 신문·방송 등에 중복적으로 공고가 가능하므로 중복 표기된 숫자임
- ④ 예고기간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제3항에 따라 행정예고 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함

2016. 1. 12.

하 동 군 수

비고: 이 공고서식은 「행정절차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것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하동군 공고 제2016 - 50호

공 고

하동군공인조례 제6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인 신조등록 및 폐기공인을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인 사용 및 폐기일 : 2015. 1. 13.
2. 신조 및 폐기사유 : 조직개편(과 명칭 변경)
3. 신조 · 폐기 공인명 및 인영

구분	공 인 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신조	폐기
신조 공인	하동군주민행복과 분임재무관인	한글전서체 2.0cm 정사각형		
신조 공인	하동군주민행복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정사각형		
폐기 공인	하동군주민복지과 분임재무관인	한글전서체 2.0cm 정사각형		
폐기 공인	하동군주민복지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정사각형		
신조 공인	하동군재정관리과 분임재무관인	한글전서체 2.0cm 정사각형		

하 동 군 공 보

(6) 제 451 호

신조 공인	하동군재정관리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정사각형		
폐기 공인	하동군재무과 분임재무관인	한글전서체 2.0cm 정사각형		
폐기 공인	하동군재무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정사각형		
신조 공인	하동군산단조성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정사각형		
폐기 공인	하동군남해안개발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정사각형		
신조 공인	하동군농촌진흥과 분임재무관인	한글전서체 2.0cm 정사각형		
신조 공인	하동군농촌진흥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정사각형		
폐기 공인	하동군농촌사회과 분임재무관인	한글전서체 2.0cm 정사각형		

폐기 공인	하동군농촌사회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정사각형		
신조 공인	하동군농업소득과 분임재무관인	한글전서체 2.0cm 정사각형		
신조 공인	하동군농업소득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정사각형		
폐기 공인	하동군소득지원과 분임재무관인	한글전서체 2.0cm 정사각형		
폐기 공인	하동군소득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정사각형		

4. 신조공인 사용일 : 2015. 1. 13.(공고 후)

2016년 1월 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입법예고

하동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4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2. 제안 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 구체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을 개정하여 지도위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 인용조문이 잘못 적용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가. 하동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 별표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청소년기본법」 “제22조”를 “제27조”로 수정 (안 별표)
 - 제11조제1항 중 “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지도자”를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로 수정 (안 제11조 제1항)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6년 2월 3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과, 전화 880-2320, FAX 880-2159)에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2. 신·구조문대비표

(10) 제 451 호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중 “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지도자”를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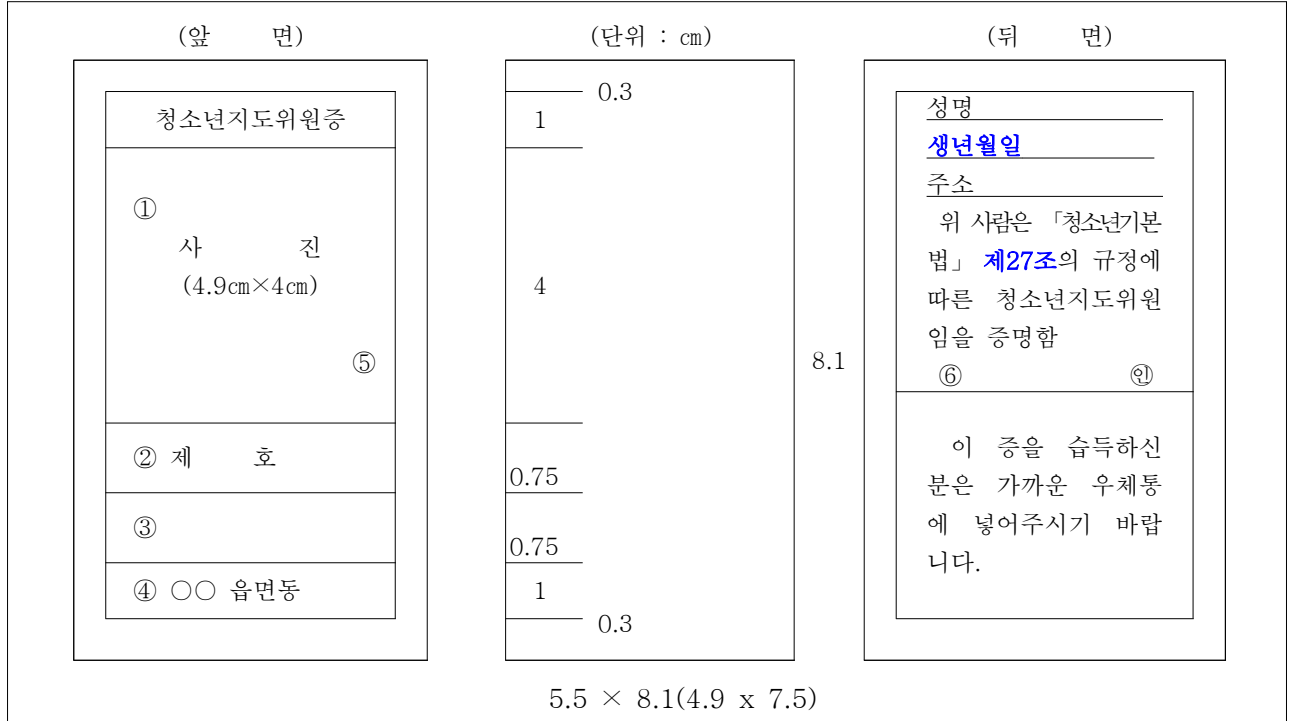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 제 451 호

[별표]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제15조 관련)



5.5

	1.7	3.2	
0		.	3
0.3			

- (비고) 1. 청소년 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 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 ① 사진(4.9cm×4cm)
 -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 ③ 성명
 - ④ 소속기관명
 -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자격) ① 청소년지도위원 으로 위촉될 수 있는자는 법 제 22조에 따른 청소년 지도자·청 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 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여야 한다.</p> <p>② (생 략)</p>	<p>제11조(자격) ① ----- -----「<u>청소년 기 본법</u>」 제21조에 따른 <u>청소년 지도사</u>----- ----- ----- ----- ----- - . ② (현행과 같음)</p>

하동군 공고 제 57 호

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 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5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2. 제안 이유 : 현행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소재지 부분을 현행화하고,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규를 법제처 권고에 따라 수정하고자함.

3. 주요 내용

가. 농산물산지유통 소재지 수정(안 제3조)

- 소재지는 하동군이 설치하는 시설물로 군 일원에 둔다.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6년 2월 4일까지 하동군(참조 : 국제통상과, 전화880-2862, FAX 880-2869, sonss67@korea.kr)에 **【별지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 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소재지) 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산지유통센터” 라 한다)는 하동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물로 군 일원에 둔다.

제31조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을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3조(소재지) 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산지유통센터”라 한다)의 소재지는 하동군 황천면 경서대로 125 1 일원에 둔다.</u></p> <p><u>제31조(준용) 산지유통센터의 관리·운영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과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u></p>	<p><u>제3조(소재지) 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산지유통센터”라 한다)는 하동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물로 군 일원에 둔다.</u></p> <p><u>제31조(준용) 산지유통센터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u></p>

하동군 공고 제 2016 - 73호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4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 75조(허가취소 등) 제1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에 앞서 같은 법 제81 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사전통지) 제2항 규정에 따라 청문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폐문부재(4회)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9일

하 동 군 수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영업소 폐쇄
- 2. 공고기간 : 2016. 1. 19.~ 2016. 2. 4.
- 3. 청문일자 및 장소 : 2016. 2. 4. (목), 11 : 00 하동군 보건소 2층 소회의실
- 4. 업소내역

업 종	업소명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사항
일반음식점	에인촌 아름다운 나라	경남 하동군 하동읍 에인촌길 13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영업소 폐쇄

5.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위반, 같은 법 제75조제1항

6. 유의사항

- 위 공고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일시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7. 본처분에 대한 문의 : 하동군 보건소 안전위생 ☎ (055)880-2353

하동군 공고 제2016-80호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0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2. 제안 이유 : 판소리 계승발전 및 선양을 위하여 건립한 체험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체험관 관리·운영을 위한 수탁자의 모집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 체험관 위탁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 체험관 관리·운영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02월 09일까지 하동군(문화관광실, 전화 880-2368, FAX880-2369, e-mail kms9979@korea.kr)으로 **【별지 서식】**에 의거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0) 제 451 호

【별지】

입법에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 출신의 동편제 명창 유성준·이선유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판소리의 보존·계승발전 및 선양을 위하여 건립한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험관”이란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의 전시실 및 감상실, 교육관, 한옥체험관, 누각, 관리사무소 및 기타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2. “전시실 및 감상실”이라 함은 판소리 명창 보유자였던 유성준·이선유 선생의 과거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유형·무형의 유산 자료를 전시 및 감상을 위하여 건립한 전시관을 말한다.
3. “수탁자”란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체험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이용료”란 체험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체험관의 명칭은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이라 한다.

② 체험관의 위치는 하동군 악양면 하중대길 44-54 일원에 둔다.

제4조(업무) 체험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성준·이선유 선생의 판소리 선양 사업
2. 판소리 관련 자료의 수집·전시 및 보존·관리
3. 판소리 예능의 체험교육

4. 판소리 예능의 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 활동
5. 판소리의 홍보와 간행물 제작·배포
6. 체험관의 운영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7. 기타 군수가 체험관의 건립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운영 및 위탁) ① 체험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판소리의 보존·계승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체험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자체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다.

제7조(이용시간) ① 체험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체험시설과 숙박시설의 이용시간은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

1. 하절기(3월~10월) : 09:00부터 18:00까지. 다만, 7월과 8월에는 1시간 연장 운영한다.
2. 동절기(11월~다음해 2월) : 09:00부터 17:00까지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항의 이용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① 체험관의 시설 중 전시실·감상실과 교육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시설과 숙박시설의 이용료는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

②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되는 시설의 이용료를 이용개시일 하루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정해진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이용한 때에는 초과한 시간당 해당 시설이용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이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9조(이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판소리 계승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3. 장애인, 불우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 경로우대 대상자, 군민 등을 위한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이용료의 반환)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시설의 고장 등 시설관리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정지된 경우
3. 시설이용 2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이용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에는 50%를 반환한다.
4. 기타 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24) 제 451 호

제11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체험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자 등 전시품이나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정신질환자
3.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5. 취사 및 야영 행위를 하는 사람
6. 노점이나 행상 등 허가 없는 토지점용행위를 하는 사람
7. 체험관 내에서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8. 그 밖에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람 및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2조(시설이용 허가) ① 체험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시설이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시실 및 감상실만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용승인 여부와 이용료 납입방법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이용 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취소·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1.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한 경우
2.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체험관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변상책임)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체험관 내 시설물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하동군 물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3장 위탁관리

제15조(수탁자의 모집 및 선정) ① 군수는 수탁자를 모집할 때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체험관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존의 수탁자가 연장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수탁자는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16조(위탁운영기간) 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의2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제17조(협약체결 등) ①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수탁자가 선정되면 군수는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수탁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탁결정통지서를 받은 수탁자는 지정 기일 내에 군수와 별지 제7호서식의 위탁 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협약체결 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위탁사용료) ① 체험관의 위탁에 따른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정한다.

② 협약에 따라 사용 수입액과 체험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원가산정 사용비용을 상계하여 위탁 사용료로 할 수 있다.

제19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시설의 관리를 태만히 하였거나 위탁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2. 운영 실적이 미흡한 등 수탁자에게 정상적인 사업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군수의 자료 제출 요구 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 군수는 위탁한 시설을 군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제20조(보조금 등 지원) ① 군수는 유성준이선유 선생의 선양사업과 기타 판소리 관련 사업 추진, 그 외 체험관 운영 등을 위해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매년 1회 이상 수탁자의 운영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점검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판소리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예능 체험교육, 자료의 수집 및 전시와 보존관리, 연구 및 조사활동, 홍보 등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과 전시품 등에 대해 선량한 운영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체험관 내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을 체험관 운영관리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과 전시품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임대할 수 없다.

⑥ 체험관의 운영·관리 시 소요되는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요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다.

⑦ 수탁자는 체험관의 내부 시설물의 설치 및 변경, 증축 등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을 위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⑧ 수탁자는 체험관 운영과 관련하여 군에서 지정한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3조(준용) 체험관에 관하여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8) 제 451 호

[별지 제1호 서식]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시설이용 허가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단체명 또는 개인		연 락 처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이용일시	년 월 일(: ~ :)			
이용목적 (행사명)				
참석예상인원				
비 고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운영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소리 체험관 시설이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하동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시설이용 허가대장

허가 번호	신청 월일	신 청 자			이용목적	참석 인원	이용일시	이용료(원)	결 재		
		주 소	성 명	연락처					담당자	계 장	실 장

[별지 제3호 서식]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시설이용 허가서

신 청 인	주 소			
	개인 또는 단체명		연 락 처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이용일시	년 월 일(: ~ :)			
이용목적 (행사명)				
참석예상인원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운영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소리체험관 시설 이용을 (신규,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하 동 군 수

[별지 제4호 서식]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시설이용 허가(취소·변경)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개인 또는 단체명		연 락 처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이용일시	년 월 일(: ~ :)			
이용목적 (행사명)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이용일시			
	기 타			
비 고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운영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소리 체험관 시설 이용허가를(취소,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하동군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수 탁 신 청 서

1. 시설명 :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2. 신청자 기재사항

단체명 또는 개인		단 체 구 분	
허가(등록)기관		허가(등록)일자	
허가(등록)번호		목 적 사 업	
대표자 성명		대표자 또는 개인 (생년월일)	
대표자 또는 개인 주소			
단체 또는 개인 소재지			

3. 제출서류

- 가. 사업계획서
- 나. 단체 대표자 또는 개인 이력서
- 다. 사업자등록증 1부.

4. 약정사항

- 가. 수탁 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 기일 내에 운영하여야 함.
- 나. 조례 및 관계법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년 월 일

「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운영 조례 」 제1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탁을 신청합니다.

위 단체 대표자 및 개인 : (인)

하동군수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수탁 결정 통지서

시설명 :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수탁자 성명 :

주소 :

귀 단체 또는 개인은 「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운영 조례 」 제16조에 의하여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우리 군과 협약하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협약을 하지 않을 경우 수탁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년 월 일

하 동 군 수 (인)

[별지 제7호 서식]

위탁 관리운영 협약서

(재산의 표시)

소재지 : 하동군 악양면 하중대길 44-54

시설물 : 전시실 및 감상실, 체험시설(전통한옥 체험관 포함), 교육관, 숙박관, 누각,
관리사 및 기타 부대시설 등

위 표시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운영을 위탁 협약함에 있어 위탁자 하동군수를 갑(이하 “갑”이라 한다), 수탁자 ○○○를 을(이하 “을”이라 한다)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기간) 갑은 위 표시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을 을에게 위탁하고, 위탁기간은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2조(준수사항) ① 을은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운영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갑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 또는 훼손하지 못한다.
2. 수탁권을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전매 또는 임대할 수 없다.
3. 수탁권을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없다.
4.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5. 갑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결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을은 그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거나 을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제3조(해지조건) ①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갑의 지시에 위반 또는 불응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본 협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등 모든 시설을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4조(해지통보) 갑과 을이 어느 일방의 사정으로 본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원상회복) 을이 사용한 시설물을 갑에게 반납할 때,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탁받은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운영 예정일) ① 관리운영 예정일은 년 월 일로 정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을이 운영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수탁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해석)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것과 본 협약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갑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위탁자) :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 동 군 수 (인)

을 (수탁자) : 단체 대표자 또는 개인 (인)

하 동 군 공 보

(36) 제 451 호

[별표 1]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체험시설 이용료 (제8조 관련)

이용구분	기준	이용시간		이용요금	비고
체험시설 (체험, 교육)	평일	전일	09:00~18:00	50,000원	
		오전	09:00~13:00	25,000원	
		오후	13:00~18:00	25,000원	
		야간	18:00~22:00	70,000원	
	토요일. 공휴일	전일	09:00~18:00	70,000원	
		오전	09:00~13:00	35,000원	
		오후	13:00~18:00	35,000원	
		야간	18:00~22:00	50,000원	

※ 1인 기준 금액이며 이용시간의 일부만 이용하고 행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 이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우천 등으로 이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 2]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숙박시설 이용료(제8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준	이용시간	일~목요일	금~토요일, 공휴일 앞날
숙 박	전통한옥 체험관	1박(1실 4명)	14:00 부터 ~ 다음날 10:00 까지	35,000	50,000

※ 단, 판소리 체험관 운영프로그램 참가자에 한하여 할인 혜택(20%)

하동군 공고 제 2016 - 111호

2016년 양식시설현대화사업 모집공고

해양수산 보조 및 용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6일

하 동 군 수

1. 사업의 종류 및 지원규모, 지원조건

회계명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원)					비고
			계	용자금		자 담		
						%	%	
용자 (1)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해 면)	1식	360,000,000	288,000,000	80	72,000,000	20	

※ 지원조건 : 용자 80%(연리 1%, 3년거치 7년분할 상환), 자담 20%

2. 신청자격

- 양식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장비를 구매하고자 하는자
- 기존 양식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자
- 신용상태가 양호하거나 담보능력을 갖춘 자
- 사업자별 사업비 총액의 2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별표 1】 양식어업별 시설 및 장비 등 대상시설물 현황 참조

3. 신청기간 : 2016. 1. 27. ~ 2016. 2. 12.

4. 신청서 제출기관 : 하동군 경제수산과

5. 신청시 구비서류

-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융자금 지원신청서 【별지 5】
-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서 【별지 5】
-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 【별지 4】
- 시설부지를 요하는 사업 : 부지확보증명서 또는 부지사용승낙서
- 지방세 완납증명서
- 기타 - 사업지침별 지원자격 및 요건 참조

6. 지원대상자 우선순위선정절차

- 2016년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시행지침 별표2의 우선순위에 의함

7. 기 타

수산사업 집행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수산사업 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붙 임 : 2016년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집행지침 1부. 끝.

양식시설현대화사업시행지침

I.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해면 및 내수면 양식어업인들에게 양식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선하여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어업인 생활 안정에 기여

2. 기본방향

- 자유무역협정 체결 가속화에 따른 시장 완전개방 이전에 고부가가치의 양식 품종에 대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현대화된 양식시설 신축 및 개보수 지원
- 양식 수산물의 위생안전 확보, 생산성 향상 및 경영 개선을 위해 친환경양식시스템 및 첨단 자동화 시스템 시설로 개량

3.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 농어업등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규모확대 촉진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 행정관청은 수산업 및 기르는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수산업법 제54조(기르는어업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르는어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기르는 어업에 관하여 개발된 기술의 사업을 하려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 내수면어업법 제17조(보조 등)
 -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내수면 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4.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5년 성과목표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법
		'11	'12	'13	'14		
양식시설 현대화 지원율	75%	-	57%	68%	-	익년 9월	용자실행개소수/사업자선정 개소수×100

5. 연차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3까지	'14	'15계획	'16~'17계획
사업물량(개소)	2,020	820	220	250	730
이차보전	-	9,270	4,581	4,764	-
사업비 계	480,000	240,000	96,000	96,000	48,000
용자지원(수협)	384,000	192,000	76,800	60,000	55,200
자부담	96,000	48,000	19,200	15,000	13,800

※ 용자금은 수협이 부담하고 정부는 시중금리와 정책금리와의 차이를 보조

6. 2015년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	지원규모 (개소)	지원액		
		계	용자	자담
계	250	75,000	60,000	15,000
해면양식 및 육상양식·종묘생산시설	200	60,000	48,000	12,000
내수면양식시설	50	15,000	12,000	3,000

※ 지원규모 : 해면:내수면=8:2, 지자체 수요조사결과에 따라 지원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II.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해면양식업자)
 - 제8조에 의한 면허(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를 받은 자 *한정어업면허 포함
 - 수산업법 제33조에 의한 행사계약에 의한 어업권자도 포함

하 동 군 공 보

(42) 제 451 호

- 제41조 제3항에 의한 허가(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를 받은 자
 - 허가를 받아 양식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 또는 단체도 포함
-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면허·허가·신고로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내수면양식업자)
- 신고를 하고 양식장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 또는 단체도 포함
- 개인어장을 대상으로 하되, 어촌계·영어조합법인·내수면어업계 등 생산자단체의 양식장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2인이상의 공유인 경우 공유자의 동의 필요)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양식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장비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
 - 기존 양식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자
 - 신용상태가 양호하거나 담보능력을 갖춘 자
 - 사업자별 사업비 총액의 2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제외대상
 - 신용도 조사결과 신용상태 불량자
 -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기간 미 경과자
 -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된 자
 - 뱀장어 기존 양식시설 면적의 확장 및 창업 등 신규 사업자. 다만, 동아시아 실뱀장어 자원보호 차원에서 기존 양식장 개보수에 한하여 지원
 - 최근 5년내 정부지원사업의 용자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사용이 확인된 자
 - 말라카이트 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자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3. 지원대상

- 양식장 및 배양장의 시설 및 기계 장비 등 일체의 유형물(소모품 제외)
 - 양식어업별 지원대상 시설 및 장비 현황(별표 1)

- 양식시설에 주로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를 우선하고 부대시설 및 부대장비는 주시설 및 장비가 없는 경우에 대신함
- 어업인 주택 및 종사자 숙소 등 관리사는 제외

4. 지원한도 기준 및 범위

구분	지원한도		
	총사업비	용자지원	본인부담
신설	80억원이하	64억원이하	16억원이하
증설 또는 개보수	50억원이하	40억원이하	10억원이하

※ 지자체 실정에 따라 지원한도 하한선 지정 가능

5. 지원조건

- 용자 80%(연리 1%, 3년거치 7년분할 상환), 자담 20%

6. 사업추진기관별 역할

- 사업총괄기관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자금지원부서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사업집행주체(주관기관) : 시·도지사(시·군·구)
- 대출취급기관 : 수협중앙회 및 회원조합

Ⅲ. 사업시행방법 및 절차

1. 사업계획 단계

- 사업집행지침 시달 및 사업물량 배정
 -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이차보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지사 및 수협중앙회장에게 시달한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별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양식어업 면허·허가건수 및 어장면적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 사업물량 및 용자금을 배정(별지 1)한다.

하 동 군 공 보

(44) 제 451 호

□ 사업 계획의 수립·시달

- 사업집행주체는 용자금 배정액 및 사업 배정물량에 따라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주관기관에 시달한다.
- 주관기관은 세부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계획(별지 2)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단계

□ 사업신청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서(별지 3)를 대출취급기관에 제공하고 대출취급기관은 동 계획서 검토 후 어업인에게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4)를 발급하여야 한다.
- 대출취급기관은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4) 발급 시 반드시 용자 가능액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양식관련 허가증(면허·신고) 사본,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서(별지 3),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4)를 구비하여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용자금 지원신청서(별지 5)와 함께 주관기관에 신청한다.
 - 다만, 양식관련 허가 예정자로 양식관련 허가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사업의 사후관리기간에 준하는 양식시설예정 건축물 또는 부지의 사용가능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사업자 선정 및 통보

- 주관기관은 사업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별표 2)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50% 범위내에서 예비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 다만, 지자체 양식어업여건에 따라 (별표 2) 외의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주관기관은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집행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한다.
- 주관기관은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4) 상의 용자가능액을 참고하여 사업대상자에 대한 사업비지원(용자지원) 한도를 산정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자 선정 후 3개월이내 사업이 미착수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예비대상자 또는 신규대상자로 대체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은 사업지원신청 수요를 바탕으로 어장여건이나 지역특성에 따라 시설의 내역, 규모 및 단가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지원개소, 지원규모 및 사업신청자 경합시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여 지원 할 수 있다.
- 주관기관은 사업신청자 중 사업이 사전에 착수된 경우에는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다만, 전년도 사업자 중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출기한 연장신청을 일실한 사업자에 한하여 주관기관은 현지·확인 점검을 통해 사업완료 여부와 대출기한 연장 미신청 사유 등을 확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전년도 사업자가 재선정되는 경우는 양식시설현대화사업 계획서 등을 전년도 제출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3. 사업비 집행단계

용자신청·지급

- 주관기관은 최종 사업대상자가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실적(계획)확인서(별지 6)를 제출하면 사업 이행상태를 확인한 후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별지 6)를 발급한다.
- 최종 사업대상자는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별지 6),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용자신청서(별지 7)를 작성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용자금을 신청한다.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신용도, 담보능력 등을 확인한 후 사업대상자별 사업비의 80%를 용자금으로 지급한다.
 - 용자금의 대출에 관한 사항은 수협중앙회 여신관련 제 규정에 따른다.

이차보전금 지급신청·지급

- 대출취급기관인 수협중앙회는 매월 익일 10일까지 용자금 지원규모에 맞춰 사업총괄기관에 이차보전금 교부결정 및 확정신청서(별지 8)와 관련 근거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다.
- 사업총괄기관은 이차보전금 교부결정 및 확정신청서(별지 8)를 검토하여 자금지원부서에 이차보전금 교부결정 및 자금배정을 요구한다.
- 자금지원부서는 수협중앙회장에게 이차보전금 교부결정 및 자금을 배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총괄기관에 통보한다.

4. 사업결과 관리단계

용자금지원결과 보고

- 수협중앙회장은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용자금 지원결과 및 이차보전 집행결과(별지 9)를 사업총괄기관과 사업집행주체(주관기관)에게 보고한다.

하 동 군 공 보

(46) 제 451 호

- 주관기관은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사업추진실적(별지 10)을 사업집행주체에게 보고하고 사업집행주체는 이를 취합하여 사업추진실적(별지 10)을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사업총괄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IV. 행정사항

1. 사업관리

- 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당해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의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관기관은 관리감독자로서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이 지원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감독한다.
- 사업총괄기관은 사업집행주체와 공동으로 연 2회이상(상·하반기 각 1회) 현지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 선정후 3개월이내 사업미착수시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2. 사후관리

- 주관기관은 필요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사후관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거나 지원된 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대출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12월 중 사업결과를 평가하여 차년도 사업물량배정 등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으로 건립된 시설 및 장비 등은 다음의 사후관리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사 업 명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양식시설현대화지원	◦ 기계·장비, 파이프 등 ◦ 건축물	◦ 5년 ◦ 10년	시 설·기 계·장 비 양 도 등

3. 사업추진일정

-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양수산부) : ‘14.12월
- 세부사업시행지침 작성 시달(시·도지사) : ‘14.12월
- 사업수요조사(해양수산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14.12월
- 사업물량 배정(해양수산부, 시·도지사) : ‘15.1월
- * 용자실행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시·도간 사업물량 조정 배정
- 사업계획 공고(시장·군수·구청장) : ‘15.1월~계속
-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시장·군수·구청장) : ‘15.1월~계속
- 용자금 지원신청 및 용자금 지급 : ‘15.1월~계속

4. 기타사항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 보조 및 용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적법·적합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 이 사업시행지침은 2015년 사업지침 기준으로 작성 2016년 사업지침 확정시 변경될 수 있음.

하 동 군 공 보

(48) 제 451 호

[별표 1]

양식어업별 시설 및 장비 등 대상시설물 현황

구분	양식대상	양식방법	현대화사업 대상시설 및 장비		
공 통			관리선, 선별·포장기, 건조기, 냉동장치, 특수차량, 보안용CCTV		
해면 양식 주시설 및 장비	면허	해조류양식	수하식, 바닥식 수하식	밧줄, 지주목, 부자, 닻 등 밧줄, 지주목, 부자, 닻 등	
		패류양식	살포식, 투석식	투석용 돌	
			침하식	가두리구조물, 로프, 부이, 닻 등	
			가두리식	가두리구조물, 로프, 브이, 닻, 작업바지선 등	
		어류등양식	가두리식	가두리구조물, 로프, 브이, 닻, 작업바지선, <u>사료저장고(배합사료만 해당), 등</u>	
			축계식	축계시설, 작업장 건물 등	
			수하식 바닥식	밧줄, 지주목, 부자, 닻 등 구획시설	
	허가	육상해수양식	수조식	수조, 침전조, 정화조, <u>사료저장고(배합사료만 해당), 건축물 및 전기, 수도 설비</u> 해수 인입, 배수 시설, 양식용 파이프 자동급이시설, 수은·산소 자동점검장치, 살균시설, 보일러, 산소공급장치 등	
			축계식	축계시설, 작업장 건물 등	
		종묘생산	수조식	수조, 침전조, 정화조, <u>사료저장고</u> 건축물 및 전기, 수도 설비 해수 인입, 배수 시설, 양식용 파이프 자동급이시설, 수은·산소 자동점검장치, 살균시설, 보일러, 산소공급장치 등	
			축계식	축계시설, 작업장 건물 등	
			밧줄식, 말목식, 멧목식	밧줄, 지주목, 부자, 닻 등	
		내수면 양식 주시설 및 장비	신고	육상양식 (양성 및 종묘생산)	수조식
	노지식			담수 인입 및 배수 시설, 자동급이시설, 수은·산소 자동점검장치, 산소공급장치, 관정, 다목적 저온저장고(사료저장고), 사료배합기, 발전기 등	

- ※ 공통시설 및 장비는 해면양식 및 내수면양식 주시설 및 장비의 후순위로 함
- ※ 위에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양식장 필요시설 및 장비는 해당됨
- ※ 관리선 및 장비는 신조 및 새로운 장비구입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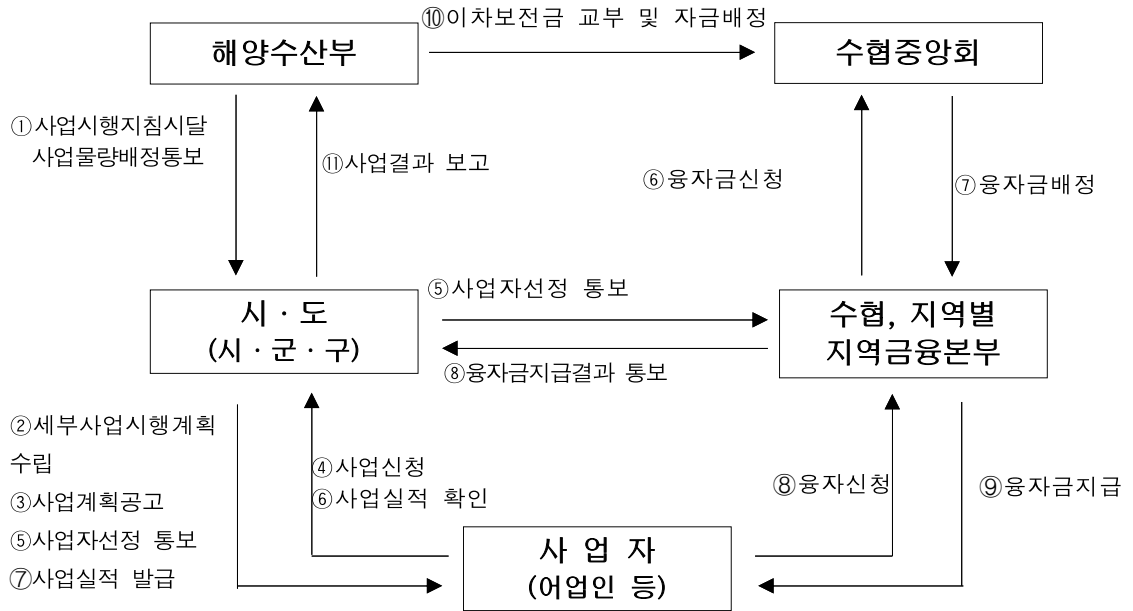
[별표 2]

사업신청자 경합 시 우선순위

구분	우선순위
공통사항	○ FTA로 영향은 받았거나 받을 것이 예상되는 품목 생산자 ○ 수출주력 품목 생산자
해면양식 및 육상양식·종묘생 산 시설	1.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은 자 2. <u>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으로 양식시설을 설치한 자</u> 3. <u>양식장을 HACCP 시설로 등록한 자</u> 4.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사업 참여자 5. 수산물이력제에 가입한 자 또는 자조금 사업 참여자 6. <u>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인버터)을 설치한 자</u> ※ 동일순위자간 우선순위는 허가된 수면적이 적은 자
내수면양식	1.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은 자 2. <u>양식장을 HACCP 시설로 등록한 자</u> 3. 수산통계 모니터링 참여자 4. 수산물이력제에 가입한 자 또는 자조금사업 참여자 5. <u>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인버터)을 설치한 자</u> ※ 동일순위자간 우선순위는 허가된 수면적이 적은 자

[별표 3]

사업 추진체계



[별지 2]

(시·군·구)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계획

1. 사업의 개요

- 사업목적
- 지원내용
- 용자금 지원규모
- 용자금 지원조건 및 상환방법

2. 신청자격 요건 및 제외대상

○

3.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및 제출서류

○

4. 사업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5. 기타 유의사항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별지 3]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서

1. 사업개요

- 신축 또는 개보수 여부
- 시설 개량 또는 장비 교체 등

2. 자산 및 부채

(단위 : 천원)

자 산			부 채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계						

※ 자산 : 부동산, 동산, 예적금, 공제(보험)

※ 부채 : 금융거래확인서상 부채

3. 사업비 부담계획

(단위 : 천원)

총액	응차지원금	자부담	자부담 조달계획
110,000	88,000	22,000	현금

※ 자부담 조달계획 구체적 작성 및 근거서류 제출

하 동 군 공 보

(54) 제 451 호

4. 사업비 명세 : 붙임 견적서 참조

품 명	규 격	단 가	수 량	금 액 (천원)	비 고
계					
-	-	-	-	-	-

5. 사업추진일정

- 공사착수예정일 : 2015년 월 일
- 공사준공예정일 : 2015년 월 일
- 용자금 요청시기 : 년 월 일
- 준공후 결과 보고일 : 2015년 월 일

6. 제출서류

- 부동산 및 동산 등 제공담보 관련 서류 일체
 - 담보제공 가능한 부동산(동산)목록, 등기부등본 등
- 금융거래확인서
- 자부담 관련 서류

[별지 4]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

(년 월 일 기준)

1.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 사실		신용관리대상자 등록	
유	무	연체금액	유	무	유	무

3. 소요금액

사 업 명	총사업비(㉠+ ㉡)	㉠융자(80%)	㉡자담(20%)

4. 융자가능액(㉠+ ㉡+ ㉢) : _____ 천원

㉠ 동산 · 부동산

담 보 종 류	감정가액①	담보인정비율②	선순위 설정금액③	융자가능금액 (①*②-③)

* 담보대출의 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 감정가액은 탁상감정으로 평가

㉡ 보증서

담 보 종 류	보증한도	한도산정	비 고
간이신용	5천만원 이내		
일반신용	3억원 이내		
정식신용	3억원 초과시		

※ 농신보 보증센터 보증서로 같음 가능

하 동 군 공 보

(56) 제 451 호

㉔ 기타담보

담 보 종 류	담 보 가 액	대출가능금액	비 고

5. 유의사항

- 행정기관의 사업자 선정이후 대출신청 시점에서 정부지침 또는 수협 내부규정에 의한 정식 신용조사를 실시하여 대출적격 여부 심사에 의해 대출가부가 최종 결정됨

년 월 일

()수산업협동조합장 (인)

()지역금융본부장 (인)

[별지 5]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융자금 지원신청서

양식어가 (단체)명	남부수산				
성 명 (대표자명)	정말연	생년월일 (남/여)	58년 1월 10일 (여)	전화 번호	(010)2646-20 35
주 소 (동, 리, 번지까지 기재)	경남 하동군 금성면 명덕길 113-69				
양식장 주소 (동, 리, 번지까지 기재)	금성면 명덕길 113-69				
양식어종	광어				
양식장면적 (신청일 기준)	(면허·허가·신고)면적	2,482㎡	양식방법	수조식	
	수면적	807.79㎡			
사 업 명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사 업 비 (천원)	계 (100%)	융자신청액 (80%)	자부담 (20%)	비 고	
	110,000	88,000	22,000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첨부서류 : 1. 양식업 관련 허가증(면허·신고) 사본 1부.
 2. 양식시설현대화사업 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3. 사업자선정용신용조사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2015년 2월 일

신청자 정말연 (서명 또는 날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신청하는 경우 연체 신용관리대상 거래처, 주사업장 권리 침해 등 보증제한사항 없이 보증심사기준을 충족하여야 지원가능함.(개인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보증한도 산정)

[별지 7]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용자신청서

양식어가명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 번호	() -
주 소 (동, 리, 번지까지 기재)					
양식장 주소 (동, 리, 번지까지 기재)					
양식어종					
양식장면적 (신청일 기준)	(면허·허가·신고)면적	m ²	양식방법		
	수면적	m ²			
사 업 명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사 업 비 (천원)	계	용자신청액	자부담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수산업협동조합장 귀하

※ 귀하의 신용도 또는 담보제공 능력에 따라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별지 8]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이차보전금 교부결정 및 확정신청서

- 1. 신청자의 주소 및 명칭
- 2. 사 업 명 :
- 3. 사업시행기간 :
- 4. 보전사업의 목적 및 내용
 - 가. 목적
 - 나. 내용
- 5. 보전금 교부신청내용
 - 가. 총 요보전액(A) :
 - 나. 기 수령액(B) :
 - 다. 금차 교부신청액(A-B) :

위와 같이 년 월 일 ~ 년 월 일 기간 중 운용분 양식시설 현대화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위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및 확정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1. 이차보전금 교부결정 및 확정신청액 계산내역서
 2. 계좌이체 지정 의뢰서
 3. 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액 총괄표

년 월 일
신청자의 주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 대표 000

[별지 9]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용자지원 및 이차보전 집행결과(분기)

1. 용자지원 현황

(단위 : %, 천원)

시·도	시군구	양 식 어가명	성명	용자금 (A)	용자지원내역			
					실 용자금 (B)	용 자 실행율 (B/A)	최초 용자일 (년월일)	용 자 만기일 (년월일)
합계								
	소계							

2. 이차보전예산 집행현황

(단위 : 천원, %)

2014년 예산 (A)	계 (B+C)	기집행액 (B)	해당분기 (C)	집행율 ((B+C)/A*100)

* 작성파일 : 한글 또는 엑셀

[별지 10]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지원결과(분기)

1. 총괄

(단위 : 천원)

시·도	구분	지원건수 (건)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내역			
			총사업비			실용자금
			계 (A+B)	용자금 (80%) (A)	자부담 (20%) (B)	
	해면					
	내수면					

2. 사업대상자별 지원실적

(단위 : %, 천원)

사군구	양 식 어가명	성명	해 면· 내 수 면	어 업 종 류	사 업 내 용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내역					최초 용자일 (년월일)	용자 만기일 (년월일)
						총사업비			용자지원			
						계 (A+B)	용자금 (80%) (A)	자부담 (20%) (B)	실 용자금 (C)	실 용자율 (C/A)		
계												

* 작성 시 유의사항

- 어업종류 :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등 인허가사항 작성
- 사업내용 : 양식대상 수생생물을 포함, 00양식시설 신축 또는 00양식시설 개보수 또는 00장비 교체(도입)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작성파일 : 한글 또는 엑셀